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출”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하”를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출”이라 한다).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자금대출(개인기업에 대한 대출은 제외)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제10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화예대출을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을기금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 「이중상환청

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 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로 적용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에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8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산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자목 중 “주민등록표상에”를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6 제3호라목(5) 중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를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한다.

별표 6 제4호나목 중 “신규 아파트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을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로, “기존 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을 “기존 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 이하 이호에서 같다)”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를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의”로 한다.

별표 6 제4호라목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를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은 이 규정 고시 후 발행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 가. ~ 다. (생략)
- 4. ~ 5. (생략)
- ② ~ ⑤ (생략)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 1. ~ 6. (생략)
- < 신 설 >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출"이라 한다).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자금대출(개인기업에 대한 대출은 제외)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 100분의 100 이하

- 가. ~ 다. (현행과 같음)
- 4. ~ 5.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화예대출을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을기금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본지점 장기

<p>② ~ ③ (생략)</p>	<p>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로 적용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현행	개정안
<p>2.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바.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p>	<p>2. 기업여신의 건전성 분류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바. ----- ----- ----- ----- ----- -----.</p>

① ~ ④ (생략)

< 신설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8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산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

현행	개정안
<p>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 아. (생략) 자.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p> <p>3.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총부채상환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다.</p>	<p>1. (용어의 정의)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 -----.</p> <p>3.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 ----- ----- ----- ----- -----.</p>

구 분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¹⁾	수도권 ¹⁾²⁾
총부채 상환비율	40% 이내	40% 이내	50% 이내	60% 이내

(현행과 같음)

주: 1) 해당 지역 소재의 아파트(주상
복합아파트 포함) 담보대출에 적용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한함

가. ~ 다. (생략)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
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에 처한 차주에 대해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재약정

(5)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
정대상지역 소재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
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로 전환
되는 경우

4. (동일세대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

-----.

(1). ~ (3). (현행과 같음)

(4)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
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
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
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
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
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

-----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4. (동일세대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제한) 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에 대하여 신규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 취급후(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아파트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대출의 상황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다. (생략)

라.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황을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대출 취급 제한)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 -----

----- 기존 주택(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 이하 이호에서 같다) -----

-----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의 -----

다. (현행과 같음)

라. -----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황을 조건으로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연락처	02-2100-2835	02-3145-8040